

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가꾸는 경남교육

2021학년도 **특별교육** · **심리치료** 운영 계획

2021. 2.

2021학년도 **특별교육** · **심리치료** 운영 계획

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

I 운영 근거

–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
제10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)

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담·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·치료·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
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

- ①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
-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,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.
-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

– 초·중등교육법

제18조(학생의 징계)

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. 다만,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.

–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

-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
 - 1. 학교내의 봉사
 - 2. 사회봉사
 - 3. 특별교육이수
 - 4.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
 - 5. 퇴학처분

－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(2019.10.17.시행)

제18조(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)

-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9. 4. 16.>
 - 1. 학교에서의 봉사 2. 사회봉사 3.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
 - 4. 출석정지 5. 학급교체 6. 전학 7. 퇴학처분
-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4. 16.>
-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, 제2호,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4. 16.>
-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

II 운영 목적 및 기관

1. 운영 목적

○ 위원회 처분에 대한 학생, 학부모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

	학교폭력	학생 징계	교육활동 침해
학생	특별교육 및 심리치료	특별교육	특별교육 및 심리치료
학부모	특별교육	×	특별교육 및 심리치료

2. 운영 기관 구분

	당연 지정 운영기관	심사 지정 운영기관
특별교육	· Wee클래스 · Wee센터 · Wee스쿨 ·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 · 국가 및 지자체 운영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학생 선도 프로그램 운영 기관	· 당연 지정 운영기관 외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희망 기관
심리치료	· Wee클래스 · Wee센터 ·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	· 당연 지정 운영기관 외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희망 기관

Ⅲ 운영 방침

1.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 도모
2. 선도와 회복 중심의 교육적 관점에서 운영
3. 가해학생의 행동특성과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
4. 가해학생에 대한 현장 특별교육 및 추수지도 강화
5. 특별교육·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상황 지속적 모니터링
6. 학교폭력 유형별, 비행 유형별 맞춤형 특별교육·심리치료 이수기관 발굴 운영
7. 아래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정 취소
 - 가. 운영계획서의 교육과정 미이행
 - 나. 운영성과 부실 및 기관 운영 관련 민원 발생
 - 다. 교육기간 중 위탁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, 안전사고 관련 사안 발생
 - 라. 관리자(대표자), 강사 및 운영직원의 성범죄 경력이 있을 시
 - 마. 기타 특별교육·심리치료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 발생 시
8. 이수기관 교육비 지원(위탁 기관에서 청구, 도 교육청에서 지원)

특별교육	심리치료
- 시간당 8,000원 - 숙박의 경우 1박당 30,000원 추가 ※ 교통비: 개별 부담	- 회당 24,000원 ※ 교통비: 개별 부담

9. 이수기관 운영 자격

특별교육	심리치료
○ 공공기관, 청소년관련기관(시설), 비영리민간단체(법인), 사회복지법인, 병원, 상담 관련 기관 중 전문상담(교)사나 청소년교육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고 학생, 학부모 특별교육이 가능한 기관	○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고 청소년 상담경력이 있는 상담 관련 기관 ※ 전문상담사 자격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담관련학 전공자 · 전문상담교사 자격, (사)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~2급, (사)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~2급 ·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사 1~3급,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1~2급 자격을 소지하고 상담 및 청소년 교육관련 경력자 ·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○ 병(의)원 전문의에 의한 치료

IV 2021. 운영기관 현황

연번	구분	기관명	전화	특별교육 (최대운영시간)	심리치료 (최대운영시간)
1	Wee 클래스	Wee클래스(전 학교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[학교폭력] 2호(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), 3호(학교에서의 봉사) 조치에 따라 부과된(17조3항) 학생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만 의뢰 가능 · [교육활동 침해] 제18조1항1호(학교에서의 봉사) 조 치에 따라 부과된(18조3항) 학생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의뢰 가능 ※ 기존대로 타 기관을 통한 이수도 가능 	
2	Wee 스쿨 (3)	낙동강학생교육원	720-7260~1	· 학생:30(2박3일) · 보호자:6	×
		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72-34			
3		낙동강학생교육원진산분원	760-3860~4	· <u>중·고여학생만 운영</u> 80시간(2주) 이상 중· 장기 특별교육	×
4		낙동강학생교육원칠북분원	586-7956~60	· <u>중·고남학생만 운영</u> 80시간(2주) 이상 중· 장기 특별교육	×
		함안군 칠북면 단내로 57			
5	Wee 센터 (18)	창원교육지원청 Wee센터	210-0461~5,7	· 학생: 24 · 보호자: 5	· 학생: 6 · 보호자: 4
		[특별교육]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덕2길 3 [심리치료]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28번길 3			
6		진주교육지원청 Wee센터	740-2091~8	· 학생: 20 · 보호자: 5	· 학생: 8 · 보호자: 3
		진주시 비봉로 23번길 8			
7		통영교육지원청 Wee센터	650-8025~7	· 학생: 20 · 보호자: 5	· 학생: 5 · 보호자: 2
		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25-32			
8		사천교육지원청 Wee센터	830-1721~7	· 학생:(중)25,(초)5 · 보호자: 5	· 학생: 5 · 보호자: 5
		사천시 삼상로 85			
9		김해교육지원청 Wee센터	070-8767-7571	· 학생:(중)13,(초)4 · 보호자: 5	· 학생: 5 · 보호자: 5
		김해시 지내동 삼안로 24번길 7			
10		밀양교육지원청 Wee센터	350-1490~7	· 학생:18 · 보호자:5	· 학생:5 · 보호자:2
		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24			
11		거제교육지원청 Wee센터	636-9670~5	· 학생: 16 · 보호자: 5	· 학생: 8 · 보호자: 2
	거제시 고현동 거제중앙로13-4				
12	양산교육지원청 Wee센터	379-3264	· 학생: 18 · 보호자: 5	· 학생: 6 · 보호자: 6	
	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				
13	의령교육지원청 Wee센터	570-7131	· 학생: 15 · 보호자: 5	· 학생: 10 · 보호자: 5	
	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2				

연번	구분	기관명	전화	특별교육 (최대운영시간)	심리치료 (최대운영시간)	
14	지역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(23)	함안교육지원청 Wee센터	580-8029	· 학생: 20 · 보호자: 5	· 학생: 10 · 보호자: 5	
		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497				
15		창녕교육지원청 Wee센터	530-3508~9	· 학생(중고)15(초)5 · 보호자: 7	· 학생: 10 · 보호자: 4	
		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35				
16		고성교육지원청 Wee센터	673-7042	· 학생: 15 · 보호자: 5	· 학생: 6 · 보호자: 5	
		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79번길 10				
17		남해교육지원청 Wee센터	860-4133	· 학생: 15 · 보호자: 4	· 학생: 10 · 보호자: 2	
		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5번길 14				
18		하동교육지원청 Wee센터	880-1933, 1935	· 학생: 15 · 보호자: 4	· 학생: 10 · 보호자: 2	
		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91				
19		산청교육지원청 Wee센터	970-3033/7~40	· 학생: 24 · 보호자: 5	· 학생: 10 · 보호자: 4	
		산청군 산청읍 친환경로 2720번길 10				
20		함양교육지원청 Wee센터	960-2742	· 학생: 5 · 보호자: 4	· 학생: 3 · 보호자: 2	
		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57				
21		거창교육지원청 Wee센터	940-6191	· 학생: 15 · 보호자: 5	· 학생: 10 · 보호자: 2	
		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35				
22		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	930-7062	· 학생: 15 · 보호자: 5	· 학생: 6 · 보호자: 3	
		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50				
23		지역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(23)	경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	711-1388	×	· 학생: 12 · 보호자: 6
			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경남대표도서관 청소년관 4층			
24			창원(창원)청소년상담복지센터	225-3900	· 학생: 12 · 보호자: 5	· 학생: 12 · 보호자: 5
			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 늘푸른전당 3층 301호			
25	창원(마산)청소년상담복지센터		245-7941/7925	· 학생: 12 · 보호자: 10	· 학생: 6 · 보호자: 5	
	창원시 마산회원구 팔룡로 128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별관 2층					
26	창원(진해)청소년상담복지센터		551-2000	· 학생: 12 · 보호자: 5	· 학생: 12 · 보호자: 5	
	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호					
27	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		749-6211	· 학생: 12 · 보호자: 6	· 학생: 12 · 보호자: 6	
	진주시 북장대로 6번길 9, 1층(인사동)					
28	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		835-4199	· 학생: 20 · 보호자: 6	×	
	사천시 문선4길 23 청소년수련관 3층					
29	김해시본소/서부상담소		325-2000/330-7920	· 학생: 12 · 보호자: 6	· 학생: 12 · 보호자: 6	
	[김해본소]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 [서부소] 김해시 율하2로 210 김해서부문화센터 2층					
30	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		355-2000	· 학생: 10 · 보호자: 5	· 학생: 12 · 보호자: 5	
	밀양시 삼문송림길 26 밀양시청소년수련관 2층					
31	거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		636-2000	· 학생: 15	×	
	거제시 증곡로 46 고현청소년문화의집 2층					

연번	구분	기관명	전화	특별교육 (최대운영시간)	심리치료 (최대운영시간)
32		통영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	644-2000	×	· 학생: 10 · 보호자: 6
		통영시 발개로 194 통영시청소년수련원 3층			
33		양산시본소/웅상분소	372-2000/367-1318	· 학생: 18 · 보호자: 5	· 학생: 6 · 보호자: 5
		[양산본소] 양산시 양주3길 36 양산시청소년회관 2층 [웅상분소] 양산시 웅상대로 1009-1 웅상도서관 지하1층			
34		의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	570-4971~2	· 학생: 20 · 보호자: 5	×
		의령군 의령읍 의령대로 1577-25			
35		함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	583-0924	· 학생: 10 · 보호자: 5	· 학생: 10 · 보호자: 5
		함안군 가야읍 말산 1길 10 청소년수련관 2층			
36		창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	532-2000	· 학생: 12 · 보호자: 5	· 학생: 12 · 보호자: 5
		창녕군 창녕읍 화왕산1로 46 5층			
37		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	673-6882	· 학생: 12 · 보호자: 5	· 학생: 12 · 보호자: 5
		고성군 고성읍 교사 4길 13 청소년문화의집 3층			
38		남해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	863-5279	· 학생: 12 · 보호자: 4	· 학생: 12 · 보호자: 4
		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종합사회복지관 3층			
39		하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	883-3000	· 학생: 12 · 보호자: 3	· 학생: 12 · 보호자: 3
		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2 하동군청소년수련관 3층			
40		산청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	970-6591	· 학생: 12 · 보호자: 5	×
		산청군 산청읍 웅석북로 92 산청군청소년수련원			
41		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	963-7922	· 학생: 12 · 보호자: 5	· 학생: 6 · 보호자: 5
		함양군 함양읍 함양여중길 10 건강가장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			
42		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	941-2000	· 학생: 12 · 보호자: 4	· 학생: 10 · 보호자: 4
		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-30 거창군청소년수련관 3층			
43		합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	930-3906	· 학생: 20 · 보호자: 5	· 학생: 20
		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96-5 청소년문화의 집 3층			
44		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	832-9273	· 학생: 15	×
		사천시 문선4길 23			
45	국가	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	286-3517	· 학생: 30 · 보호자: 6	×
		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3번길 7			
46	및	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	051)971-8502~3	· 학생: 20 · 보호자: 5	×
		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89번길 11			
47	운영	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	052)272-5021	· 학생: 35 · 보호자: 6	×
		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238 달성빌딩 3층			
48	(27)	거제경찰서	639-0292	· 학생: 10	×
		거제시 진목1길 2 여성청소년계			

연번	구분	기관명	전화	특별교육 (최대운영시간)	심리치료 (최대운영시간)
49		거창경찰서	949-0356	· 학생: 10	×
		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 여성청소년계			
50		고성경찰서	647-3348	· 학생: 10	×
		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 여성청소년계			
51		김해시서부경찰서	310-0163	· 학생: 10	×
		김해시 계동로 175 여성청소년계			
52		김해시중부경찰서	344-8195	· 학생: 10	×
		김해시 김해대로 2307 여성청소년계			
53		남해경찰서	860-6247	· 학생: 10	×
		남해군 화전로 89 여성청소년계			
54		마산동부경찰서	233-7242	· 학생: 10	×
		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 여성청소년계			
55		마산중부경찰서	240-2389	· 학생: 10	×
		창원시 마산합포구 3.15대로 147 여성청소년계			
56		밀양경찰서	350-0358	· 학생: 10	×
		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 여성청소년계			
57		사천경찰서	850-7117	· 학생: 10	×
		사천시 남일로 37 여성청소년계			
58		산청경찰서	970-3259	· 학생: 10	×
		산청군 산청읍 중앙로1 여성청소년계			
59		양산경찰서	392-0082	· 학생: 10	×
		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 여성청소년계(4층)			
60		의령경찰서	570-0345	· 학생: 10	×
		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3 여성청소년계			
61		진주경찰서	750-0272	· 학생: 10	×
		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 여성청소년계			
62		진해경찰서	549-8143	· 학생: 10	×
		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 여성청소년계			
63		창녕경찰서	520-9255	· 학생: 10	×
		창녕군 창녕읍 종로 38-6 여성청소년계			
64		창원서부경찰서	290-0209	· 학생: 10	×
		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 여성청소년계			
65		창원중부경찰서	233-0114	· 학생: 10	×
		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 여성청소년계			
66		통영경찰서	640-0149	· 학생: 10	×
		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 여성청소년계			

연번	구분	기관명	전화	특별교육 (최대운영시간)	심리치료 (최대운영시간)
67		하동경찰서	880-3119	· 학생: 10	×
		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39 여성청소년계			
68		함안경찰서	589-8347	· 학생: 10	×
		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85 여성청소년계			
69		함양경찰서	960-1347	· 학생: 10	×
		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12 여성청소년계			
70		합천경찰서	930-6199	· 학생: 10	×
		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67 여성청소년계			
71		푸른나무청예단 경남지부	263-1388	· 학생: 30 · 보호자: 10	· 학생: 20 · 보호자: 6
		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3번길 31 5층(도계동, 경도빌딩)			
72		다운심리상담센터	264-3343	· 학생: 30 · 보호자: 5	· 학생: 10 · 보호자: 5
		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93번길 28 우영프라자 521호			
73	민간 단체 위탁 기관 (18)	김해교육문화연구소	336-1027	· 학생: 30 · 보호자: 10	· 학생: 10 · 보호자: 5
		김해시 내외중앙로 50 정우센터빌딩 801호			
74		경남위기청소년지원센터	331-0505	· 학생: 60 · 보호자: 30	· 학생: 60 · 보호자: 30
		김해시 김해대로 2421 2층			
75		한국통합TA연구소	312-1242	×	· 학생: 20 · 보호자: 6
		김해시 활천로 233 더블리안 402호			
76		(사)한국청소년문화원	387-6824	· 학생: 30 · 보호자: 5	· 학생: 10 · 보호자: 6
		양산시 덕명로 322, 상가동 4층			
77		푸른나무 청예단 진주시천지부	748-0388	· 학생: 30 · 보호자: 10	· 학생: 20 · 보호자: 20
		진주시 진양호로 341			
78		심리상담센터 본	642-4690	· 학생: 30 · 보호자: 10	· 학생: 20 · 보호자: 6
		통영시 달포큰길 70 2층			
79		두리심리상담연구소	010-3122-5027	· 학생: 30 · 보호자: 10	· 학생: 20 · 보호자: 6
		통영시 용남면 화포1길 66			
80		인제대학교 금연교육연구소	325-3319	· 학생: 30	×
		김해시 인제로 197 인제대학교 D동 탐진관 307-1호			
81		마산 YMCA	251-4837	· 학생: 30 · 보호자: 30	×
		창원시 마산회원구 앵지밭골2길 7			
82		해오름아동가족심리상담센터	746-1078	×	· 학생: 30 · 보호자: 10
		진주시 진양호로 467 3층			
83		미샘 심리상담센터	387-7926	· 학생: 18 · 보호자: 6	· 학생: 6 · 보호자: 2
		양산시 금오13길 4			
84		더 홈 심리상담센터	362-4424	· 학생: 30 · 보호자: 10	· 학생: 40 · 보호자: 10
		양산시 물금읍 범구로 17			

연번	구분	기관명	전화	특별교육 (최대운영시간)	심리치료 (최대운영시간)
85		한국심리지원협회	688-4842	· 학생: 40 · 보호자: 10	· 학생: 40 · 보호자: 10
		거제시 옥포대첩로 48 2층 거제시 아주1로 3길 7			
86		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	342-6867	· 학생: 15 · 보호자: 15	· 학생: 15 · 보호자: 15
		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78(경남단감농협 금병지점 2층)			
87		다울 심리상담센터	010-4711-4326	· 학생: 30 · 보호자: 10	· 학생: 30 · 보호자: 10
		김해시 전하로 304번길 11 성벽빌딩 304호			
88		한국다인상담교육센터	325-8383	· 학생: 20 · 보호자: 20	· 학생: 10 · 보호자: 10
		김해시 구지로 11 201호			
특별교육 운영 기관 수 / 심리치료 운영 기관 수				83	51

※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신청 시 운영 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(유선)

※ 사안의 중대성, 대상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운영 시간 조정 가능

■ 학생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

1. 교육 대상

학교폭력	학생 징계	교육활동 침해
특별교육 및 심리치료	특별교육	특별교육 및 심리치료

–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
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

- ①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
-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,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.
-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

–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

-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

1. 학교내의 봉사	2. 사회봉사	3. 특별교육이수
4.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		5. 퇴학처분

–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
제18조(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)

-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9. 4. 16.>

1. 학교에서의 봉사	2. 사회봉사	3.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
4. 출석정지	5. 학급교체	6. 전학
		7. 퇴학처분
-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4. 16.>
-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, 제2호,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4. 16.>

2. 교육 시간: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/선도위원회/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

3. 교육 방법

○ 특별교육 - 1:다수 운영 가능

○ 심리치료 - 1:1 운영 원칙

4. 교육 내용

○ 이수 필수내용: 50% 구성

-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① 분노조절 | ② 폭력에 대한 바른 인식 | ③ 폭력 관련 법교육 |
| ④ 자기이해 | ⑤ 공격성 조절 | ⑥ 행동수정 |
| ⑦ 충동성 조절 | ⑧ 자기통제력 향상 | ⑨ 감정다루기 훈련 |
- 등의 주제로 심리치료, 자기성찰,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 중심 구안

○ 기관별 특색프로그램 : 50% 구성

- 기관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

○ 학칙 위반의 경우 준법 관련 교육, 교권침해의 경우 교권의 존중과 타인의 학습권 관련 교육을 필수내용 안에 구성하여 프로그램 차별화

○ 성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특별교육 프로그램 안에 성인식 교정, 피해자 공감, 친밀한 대인관계 만들기, 재발 방지 계획 세우기 등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포함

■ 보호자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

1. 교육 대상

학교폭력	학생 징계	교육활동 침해
특별교육	×	특별교육 및 심리치료

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
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

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

-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

제18조(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)

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

2. 교육 내용

- 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
- 가해행위를 하는 학생의 심리상태 파악
- 바람직한 학부모상 등 자녀 이해 교육법 등
- 교권 침해의 경우 교권의 존중과 타인의 학습권 관련 교육을 필수 내용에 구성하여 프로그램 차별화

3. 운영 방향

- 기관 특성과 폭력 사안의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
- 보호자들의 특별교육 참가율 제고를 위해 주말, 야간교육 개설

4. [학교폭력]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시간

조치사항	이수시간	교육 운영	비고
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(2호) 학교봉사(3호)	4시간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- 학부모 · 학생 공동교육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보호자가 학교로 이수증 제출 불요 - 위탁기관 이수 결과 보고로 대체
사회봉사(4호) 특별교육(5호) 출석정지(6호) 학급교체(7호) 전학(8호)	5시간 이상		

5. [교육활동 침해] 학부모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시간

-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따름

■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실시 방법

1. 실시 단계

- ① 위원회에서 가해학생·보호자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결정
 - ② 학교에서 유선으로 교육감지정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위탁기관에 이수 일정 협의
 - ③ 학교에서 위탁기관 및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'이수신청서(붙임3)' 제출
 - ④ 학생, 보호자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
- ※ 보호자가 특별교육위탁기관 입·퇴소 시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지 못할 시 학교 관계자(담임이나 생활지도 담당교사)가 동행
- ⑤ 학기별 이수현황 제출(연 2회): (붙임4) 엑셀 서식

2. 추수 지도 단계(권장 사항)

- 학교별 추수 지도 자체 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교(급) 복귀 시 학교적응 상황을 상담 및 모니터링 함.
- 추수 지도는 담임교사·상담교사·전문상담사·꿈키움교실 담당교사·진로상담교사 등의 관찰 및 상담 활동, 외부전문가의 1:1 상담 및 멘토링 등을 활용
- 모니터링 결과 추가 치료·교육이 필요한 경우 학생과 보호자 동의를 얻어 학교 Wee클래스, Wee센터 등에서 보완 교육 실시

3. 운영 방법 및 행정 사항

- 학교에서는 학생, 학부모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기관과 이수 일정을 협의 후 신청서 발송(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및 기관), 보호자에게 일시 및 장소를 안내
- 운영기관에서는 학생 이수 상황을 파악하여 결과 보고서(기관별 자체 보관)를 학교로 송부
- 학교는 학기별 이수현황(붙임 4)을 지역교육청으로 제출(2021.8.18.-1차, 2022.2.16.-2차)
- 지역교육청은 학교별 이수현황(붙임4)을 취합하여 도교육청 민주시민과로 자료 제출(2021. 8. 25.-1차, 2022. 2. 23.-2차)

- 보호자가 **특별교육 이수** 또는 **심리치료에 불응**하고 3개월이 경과할 경우, 학교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 명단을 시·도교육감에게 **통보(보호자 특별교육·심리치료 미이수 현황, 서식3)**하고 지속적 이수 요청
- 교육감의 이수 요청에도 불응하는 경우, **교육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**
- ※ 보호자의 범위는 부모, 가족, 친척, 법정대리인 등으로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의 위치에 있는 사람

4. 과태료 부과 절차

- 학교폭력: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
- 교육활동 침해: 학부모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이수

조치	보호자 특별교육 (심리치료) 이수 조치	보호자 특별교육(심리치료) 실시	과태료 부과
시행 기관	·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· 교권보호위원회	학교장 시도교육감	시도교육감
내용	· 특별교육 (심리치료) 이수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이수 서면 통보	· (학교장) 보호자에게 특별교육(심리치료) 실시 서면 통보 (기한: 3개월 이내) ↓ · (학교장)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교육 이수 불응할 경우, 교육감에게 명단 통보 ↓ · (교육감) 학교장에게 명단을 통보받은 14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이수 서면 안내 (기한: 1개월 이내)	· (교육감) 미이수한 학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↓ · (학부모)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수하거나 의견 제출 ↓ · (교육감)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취소 → 15일간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→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기간별 기중 부과

VI 기대효과

1.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선도 대상 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치료·교육 지원으로 사안 재발 방지
2. 학교폭력예방 및 재발률 감소를 통해 가해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 및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의 성장 발판 마련
3.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

VII 관련 서식

[서식1]

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통보

귀하의 자녀인 홍△△의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사회봉사 ○일과 특별교육 이수 조치 ○○시간이 내려졌습니다.

따라서 홍△△의 보호자인 귀하도 같은 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홍△△과 함께 ○○○교육원(Wee센터, ○○센터 등 지정장소 명기)에서 향후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특별교육을 ○○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만약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,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교육이수 완료기간	교육이수 통보일 ~ 3개월 이내	교육 이수 관련 문의	○○○○학교 인성부장 ○○○ 연락처: 000-0000
과태료 부과일	교육이수 통보일 ~ 4개월 후	과태료	300만원 이하 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)

2021년 월 일

○○○○학교장 (인)

[서식1-1]

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(심리치료) 이수 조치 통보

귀하의 자녀인 홍△△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사회봉사 ○일과 특별교육(심리치료) 이수 조치 ○○시간이 내려졌습니다.

따라서 홍△△의 보호자인 귀하도 같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홍△△과 함께 ○○○교육원(Wee센터, ○○센터 등 지정장소 명기)에서 향후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특별교육(심리치료)을 ○○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만약 특별교육(심리치료)을 받지 아니할 경우,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교육이수 완료기간	교육이수 통보일 ~ 3개월 이내	교육 이수 관련 문의	○○○○학교 인성부장 ○○○ 연락처: 000-0000
과태료 부과일	교육이수 통보일 ~ 4개월 후	과태료	300만원 이하 (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 1항)

2021년 월 일

○○○○학교장 (인)

[서식 2] 자료 제출 시에는 엑셀파일 제출(붙임3 별첨)

특별교육 · 심리치료 이수 신청서

순	구분 (학교폭력) (학생징계) (교육활동 침해)	내용	소속 학교	이수 신청 현황														
				학생									보호자					
				성명	학년	성별	연락처	위원회 개최일	조치사항	교육기관	신청 사유	교육기간 (시간)	성명	관계	연락처	교육기관	교육기간 (시간)	
1	학교폭력	특별교육	○○초	김○○	3	남	010-0000-0000	2021.00.00.	1, 2, 4	○○ Wee센터	금품 갈취	2021.00.00. ~00.00. (0일,30시간)	이○○	모	010-0000-0000	○○ Wee센터	2021.00.00. ~00.00. (0일,10시간)	
2	교육활동 침해	심리치료																
계																		

- ※ 신청방법 : 단위 학교에서는 특별교육 · 심리치료 이수 기관에 우선으로 이수 일정을 협의한 후 **위의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이수 예정 기관과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공문으로 제출(이수 결과 현황은 학기당 1회 제출)**
- ※ 보호자의 경우 **미이수 시**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. 보호자(학부모, 친척, 가족, 법정대리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이수하면 됨)의 특별교육 · 심리치료 이수는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.
- ※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학생이 **전학, 유예, 자퇴를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교육 이수 종료 후 처리가 원칙**
- ※ 구분란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는 ‘**학교폭력**’, 선도(징계)위원회 조치는 ‘**학생징계**’,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는 ‘**교육활동 침해**’ 선택
- ※ 내용란에는 **특별교육, 심리치료** 중 선택

[서식 3]

<보호자 미이수자 현황>

- 3개월 내 미이수 시 다음날 즉시 학교장이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보고 -

보호자 특별교육 · 심리치료 미이수자 현황

학교명	○○○○학교	담당자	○○○(연락처:010-0000-0000)
-----	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연 번	구 분	내 용	학 생		보 호 자			연 락 처	위 원 회 개 최 일	학 부 모 교 육 통 보 기 간 (3 개 월)
			학 반	이 름	관 계	이 름	교 육 시 간			
1	학교폭력	특별교육	2-3	○○○	모	○○○	5	010-0000 -0000	2021. 00.00.	2021.00.00. ~2021.00.00.
2	교육활동 침해	심리치료								

※ 이수 계획(교육지원청, 도교육청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)

- 기관명:
- 예정 일자:
- 참고 사항:

2021년 월 일

확인자 : ○○○○ 학 교 장 (인)

경상남도교육감 귀하